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가 족 정 책 과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주민의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 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2)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3)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통・교류 공간 제공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취업・창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4)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2) 위　　치 : 구미시 구미중앙로7길 8, 상생플랫폼 7층

3) 시설규모 : 650.83㎡ (197평)

4) 주요시설 : 사무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8. 12. 31.

바. 위탁 소요예산 : 연간 130백만원 (시비 100%)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의결

○ 수탁기관 :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형미)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 90점 *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소통·교류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분야의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2)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3)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6. 7. 31.(금) 14:00

○ 장　　소 :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6명

- 참석자(4명), 불참자(2명)

○ 심의대상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적격여부 심의

○ 심의방법

- 심의기준 : 3개 분야, 9개 항목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평균
- 의결방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할 경우 심의 결과 '적격' 판정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격

심의안건	심사위원별 점수				심사 평균 점수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	90	94	90	88	90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시 종사자 급여,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비,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최저임금 및 수당, 연도별 운영계획,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 유지비 등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세입	○민간위탁금	130,000	130,000	260,000
	소계(a)	130,000	130,000	260,000
세출	○인건비	66,658	69,088	135,746
	○운영비	53,342	48,912	102,254
	○사업비	10,000	12,000	22,000
	소계(b)	130,000	130,000	260,000
□ 총 비용(a-b)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시 비	130,000	130,000	260,000
자부담			
합 계	130,000	130,000	26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상승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

6. 작성자 :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김현주(☎480-653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항 목	계(천원)	산 출 기 초
2027	합 계	130,000	
	인건비	66,658	· 급여 53,671,000원 · 4대보험 부담비용 5,946,000원 · 퇴직적립금 4,473,000원 · 제수당 2,568,000원
	운영비	53,342	· 공공요금 20,555,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 32,787,000원
	사업비	10,000	· 여성역량강화·권익증진 등 프로그램 운영 10,000,000원
2028	합 계	130,000	
	인건비	69,088	· 급여 55,627,000원 · 4대보험 부담비용 6,163,000원 · 퇴직적립금 4,636,000원 · 제수당 2,662,000원
	운영비	48,912	· 공공요금 20,165,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 28,747,000원
	사업비	12,000	· 여성역량강화·권익증진 등 프로그램 운영 12,000,000원

소 관 부 서		가족정책과
입	과 장	홍 경 화
안	담 당	백 은 영
자	담 당 자	김 현 주 (480-6537)